

감원방지 의무기간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발생시 지원금 지급제한(부지급, 회수) 안내

아래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**감원방지 의무기간을 준수**하여야 하며, 만약 귀 사업장내 소속 근로자를 **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을 시킬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(부지급, 회수)**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① 지원금별 감원방지 의무기간(주요 내용)

※ 『 ☐ 해당 지원금』란에 체크하세요.

지원금 종류	감원방지 의무기간 [고용조정에 의한 이직 금지]
고용유지 지원금	
☐ 휴업 ☐ 휴업훈련 ☐ 휴직	- 고용유지조치기간과 그 후 1개월까지(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 채용 금지) - 인력재배치: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된 피보험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 이직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
고용창출 장려금	
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	-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※ 다만, 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
고용안정 장려금	
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(대체인력지원) 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(대체인력지원)	-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(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) ※ 다만, 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함
청년, 장년, 고령자 고용장려금	
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 (정년퇴직자 계속고용, 재고용) ※ 2016년 일몰 사업	- 계속고용(재고용)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※ 1개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,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
☐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	- 신청분기의 다음분기 첫날을 기준으로 신청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
☐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※ 2017년도 승인 사업장	-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

②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

※ 『 ☐ 해당, 비해당』란에 체크하세요.

대분류	중분류	세분류	고용조정 해당여부
회사사정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	23.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(해고·권고사직·명예퇴직 포함)	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이직 -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 이직 - 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이직	☐ 해당 ☐ 비해당

		-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(명예)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·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·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④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- 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(아웃소싱 포함)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직 -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 이직 - 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	
	26.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권고 사직	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	☐ 해당 ☐ 비해당

③ 지원의 제한(고용보험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)

-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, 장려금 또는 인건비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함. ※ 『 ☐ 해당, 비해당 』란에 체크하세요.

1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☐ 해당	☐ 비해당
2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☐ 해당	☐ 비해당
3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☐ 해당	☐ 비해당
4.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	☐ 해당	☐ 비해당

상기 내용을 안내 받았으며,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.

201 . . .

확인자 사업장명: (인)

※ 작성자 직위: 성명: (인, 서명)

긴급 연락처: